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

2005. 9. 8(목)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9월 1일 이천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9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8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제1차(2005. 9. 7)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가. 제안이유

-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고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되므로 향교재산에 대한 감면조례의 사문화 방지 및 감면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 2005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서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표 경감을 통하여 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정하 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적용함(안 제28조)
-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함(안 제29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해수)

-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 거,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향교 재단 소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 율을 현행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변경하고,
- 토지분 재산세에 적용되는 개별 공시지가의 경우, 공시일의 변경으로 인하여 2년분이 일시에 적용됨으로서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2004년도 공시지가 보다 2005년도 공시지가가 상승된 경우에 한하여 상승분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과세 하려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7. 기타사항 : 없 음